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백선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8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4.

발 의 자 : 백선희 · 이해민 · 박희승
황운하 · 황명선 · 정준호
김상욱 · 이학영 · 강준현
김영호 · 강경숙 · 손명수
서왕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, 부품 국산화 및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미국·유럽연합(EU) 등 주요 방산물자등의 수출국들이 탄소중립 등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·중견 방산업체등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방위산업체등이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경영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3 신설 등).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(지속가능경영의 촉진 및 평가)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등이 경제적 수익성, 환경적 건전성,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(이하 “지속가능경영”이라 한다)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방위산업 특화 지속가능경영 기준 및 지표의 개발·보급
2. 지속가능경영 도입을 위한 교육, 상담 및 정보 제공
3. 지속가능경영 진단 및 수준 평가
4.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제 및 정책 대응 지원
5. 그 밖에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등 중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방산업체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 의 수립) ① (생 략)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 8. ~ 10. (생 략) ③ ~ ⑦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조(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 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<u>7의2.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 영 촉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</u> 8. ~ 10. (현행과 같음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<u>제10조의3(지속가능경영의 촉진 및 평가)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등이 경제적 수익성, 환경적 건전성, 사회적 책임성 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(이하 “지속가능경영”이라 한다)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 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</u> <u>1. 방위산업 특화 지속가능경영 기준 및 지표의 개발·보급</u> <u>2. 지속가능경영 도입을 위한 교육, 상담 및 정보 제공</u> <u>3. 지속가능경영 진단 및 수준</u>

평가

4.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관련
규제 및 정책 대응 지원

5. 그 밖에 방산업체등의 지속
가능경영 활동을 위하여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등
중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
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방
산업체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
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